

청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나574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나5749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가단594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환

변론 종결2022. 11. 25.

판결 선고2022. 12. 23.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가단5948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접수 제85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당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병렬

판사강현호

판사이종인

별지